

월간 국제 ODA 동향

(2005. 7. 29.)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주요토픽

[Page]

- [OECD DAC,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후속조치](#) [2]
— [12개 진도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 ◆ 12개 지표중 9개 정량지표에 대한 수량목표가 제정되었으나, 나머지 3개 수량목표는 미국의 반대로 합의 연기

- [타이드원조 프로젝트 관련 원조공여국간 이의제기의 주요 수단 및 사례](#) [8]
 - ◆ 타국의 타이드원조 사업 관련,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이의제기 수단인 매칭, 대면협의요청, 공통방침제안에 대한 내용 및 사례 분석

단 신

- [2005년도 G8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14]

-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붐과 석유](#) [16]
〈일본의 월간 "國際開發ジャーナル" 7월호 기사 요약 정리〉

자 료

- [2004년도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협력무상원조 현황](#) [21]

- [2005년도 세계은행 및 OECD 국가분류](#) [24]

주요토픽 1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후속조치 - 12개 진도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

【요 약】

- OECD DAC 산하 원조효과작업반, '05년 7월, 12개 진도지표중 9개 지표의 수량목표에 합의
- 동 수량목표는 개별수원국 수준이 아니라, 범지구적 수준에서 이행해야 하는 총량 목표
- 우리나라 ODA의 실행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수량목표에 유의하여 대비 필요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05년 3월 고위급포럼에서 채택된 원조효과(aid effectiveness)제고에 관한 파리선언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DAC 산하 원조효과작업반(WP-EFF)이 제시한 9개 진도지표에 대한 수량목표에 합의
- DAC는 지난 5.30~31.간 1차 검토에 이어, 2차로 7.7~8.까지 이틀 동안 파리 선언의 이행진도 점검을 위한 12개 지표에 대해 검토를 완료함. 그 중 9개 지표에 대해 2010년까지 도달하기 위한 수량목표(targets)와 동 수량목표의 2005년 현재수준이라 할 수 있는 기준선(baselines)에 합의하게 된 것임
- ※ 지난 3월 파리 선언 참가국은 아래 5가지 주제의 이행진도 측정을 위한 12개 진도지표(indicators of progress)와 동 지표에 대한 각각의 수량목표를 설정키로 하고, 그 중 5개의 진도지표별 수량목표(targets for 2010)에 잠정합의하고, 9월 이전에 나머지 7개에 대해 DAC 원조효과작업반으로 하여금 합의하도록 위임한 바 있음
 - ① 수원국의 주도력(ownership)
 - ②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정책의 일치 (alignment)
 - ③ 원조공여국간 원조절차와 실행의 조율 (harmonization)
 - ④ 원조의 개발결과지향 (results)
 - ⑤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책임 (mutual accountability)

- 상기 수량목표는 개별수원국 수준에서가 아니라 범지구적 수준(the global level)에서 이행해야 할 총량목표에 대한 합의로서, 2010년까지 수량목표를 이행해야 할 주체는 파리선언을 인준하거나 금년말까지 인준할 국가이며, 이행 점검의 대상국은 동 선언을 인준했거나 또는 향후 인준할 수원국임
- 파리선언 참가국중 미국이 4번 진도지표의 수량목표와 관련하여 기술협력을 개도국의 능력배양의 대용물로 간주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5번 지표의 수량목표와 관련하여 공여국이 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공공재정관리체제를 이용하는 데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여, 동 지표들의 수량목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 12개 진도지표중 8번째 지표인 ‘원조의 언타이드화’는 2010년 수량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ODA의 실행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원국의 재정관리체제와 조달체제를 통한 원조유입액의 비중과 프로그램방식의 원조비중, 합동조사단의 구성비중과 국가분석작업의 공동실시 비중을 확대한다는 합의내용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ODA의 계획과 실행의 과정상 동 합의내용이 수행되지 않고 있거나 그 정도가 저조함
- 이에 따라 동 지표의 수량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대비없이 DAC 가입을 전제로 조급하게 추진하게 되는 경우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

붙임 : 원조효과성 이행점검을 위한 진도지표별 수량목표

(붙임)

원조효과성 이행점검을 위한 진도지표별 수량목표

주제	진도지표	지표내용	2010년 수량목표	2005년 기준치		
수원국의 주도력	1	1 실행가능한 개발전략을 갖는 수원국의 수	세계은행 포괄적 개발의 기준틀(CDF)의 기준치를 넘는 국가의 수가 75% 이상 ¹⁾	9%		
공여국과 수원국의 일치	2	2a	세계은행 CPIA ²⁾ 평가중 신뢰할 수 재정관리체제(PFM/CPI A) 척도의 상황	수원국중 50%가 0.5단위 1(최저)~6(최고)범위의 척도중 최소 1등급(0.5) 상황	n.a.	
		2b	신뢰할 수 있는 조달체제	수원국중 1/3이 A(최고)~D(최저) 4단계 등급중 1단계 상황	n.a.	
	3	3 수원국 회계연도중 유입예정된 원조총액중 동국 예산계획에 편성된 원조	'05. 3월 최소 85%이상이라고 잠정합의 '05. 7월 합의된 목표는 예산계획에 편성되지 않는 원조유입액의비중을 1/2로 축소	90%		
	4	4 능력개발활동의 조정	수원국에 대한 기술협력의 총규모중 능력개발활동지원을 위한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비중	기술협력규모의 1/2을 국가개발전략과 부합하는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실시	27%	
	5	5 수원국 정부시스템의 활용	5a	수원국 재정관리체제를 활용하는 원조유입액의 비중	수원국 재정관리체제를 활용하지 않는 원조유입액비중의 2/3 (PFM/CPIA 점수 5이상인 수원국) 또는 1/3(동점수 3.5~4.5인 수원국) 축소	n.a.
			5a	수원국 재정관리체제를 활용하는 공여국의 비중	100%(PFM/CPIA 점수 5이상인 수원국) 또는 90%(동점수 3.5~4.5인 수원국)	n.a.
			5b	수원국 조달체제를 활용하는 원조유입액의 비중	수원국 조달체제를 활용하지 않는 원조유입액비중의 2/3 (A등급 수원국) 또는 1/3(B 등급 수원국) 축소	n.a.
			5b	수원국 조달체제를 활용하는 원조유입액의 비중	100%(A등급 수원국) 또는 90%(B등급 수원국)	n.a.

1) 2005년 3월 파리선언시 합의된 5개 수량목표

2) CPIA(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 Assessment) : 세계은행이 개도국의 예산 및 재정관리체제를 분석 평가하는 등급

주제	진도지표	지표내용	2010년 수량목표	2005년 기준치		
공여국과 수원국의 일치	6	중복되는 원조실행체제 마련을 위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	6	병행설치된 사업실시 기구(PIU)의 수	PIU총수의 2/3이하로 축소	34개국 1652개 기구
	7	원조의 예측가능성	7	해당회계년도중 유입 예정된 원조금액중 실제 집행된 금액	미집행금액 비중의 1/2로 축소	80%
	8	원조의 언타이드화	8	이국간원조증인총액중 언타이드원조의 비중	지속적으로 개선	41%
공여국간의 원조조율	9	원조공여국간 공동의 제도와 절차	9	일반예산이나 국제수지, 부분별 예산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으로 실행되는 원조의 총원조액 대비 비중	66%	43%
	10	공동분석의 장려	10a	개별수원국에 파견되는 공여국조사단(field missions)중 복수국 합동, 또는 대표국 1개국이 수행하는 조사단	공여국 조사단 총수의 40%를 합동으로 구성	15%
			10b	국가분석보고서 총수중에서 합동 또는 대표국에 의해 수행되는 보고서의 수	국별분석작업의 66%를 합동(joint)으로 수행	30%
개발결과의 관리	11	결과지향적 체제	11	투명하고 이행점검가능한 성과평가의 틀을 갖춘 수원국의 수	세계은행 CDF 분석상의 평가기준에 의거, A와 B 등급 수원국을 받지 못한 수원국의 비중을 2/3수준으로 축소	4%
상호책무성	12	상기 원조효과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상호평가를 실시	12	진도점검을 위한 상호평가를 수행하는 수원국의 총수원국에 대한 비중	100%	9%

— 12개 진도지표 및 수량목표의 주요 내용 —

- 지표1은 최소한 75%의 개도국이 실행가능한 개발전략을 수립한다는 목표
- 지표2는 재정관리체제와 조달체제로 구분하여,
 - 재정관리체제에 대해서는 50%의 개도국이 CPIA(세계은행이 개도국의 예산 및 재정관리체제를 분석·평가하는 등급)상 최소 1등급(0.5점)을 개선키로 함

- 조달체제에 대해서는 33%의 개도국이 최소 1등급(총4개 등급중)을 상향 개선키로 함
- 지표2(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재정관리체제 수립)와 지표5(공여국이 개도국의 조달체제 및 재정관리체제를 이용)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어 2개 지표를 연계하여 검토한 바, 기준선 및 구체적인 목표에 관하여 국가별로 입장 차이가 커서 논란이 많았음
- 지표3과 관련, 개도국의 정부예산에 편입되는 정부부문에 대한 원조유입액(분자)이 수원국 회계연도에 예정된 정부부문에 대한 원조유입액(분모)의 85%이상 이 되도록 하되 편입되지 않은 원조유입액의 비중을 1/2이하로 축소키로 함 (지표7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표7과 연계하여 검토한 바, 분자 및 분모의 정의, 포함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음)
- 지표4와 관련, 조정된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협력의 규모(분자)가 총 기술협력규모의 50%이상 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
- 지표5와 관련,
 - CPIA상 5점 이상인(즉, 재정관리체제가 양호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재정관리체제를 활용하지 않는 원조유입액의 비중을 3분의 2수준으로 감축하고, 100%의 공여국이 개도국 재정관리체제를 이용한다는 목표
 - CPIA상 3.5 내지 4.5인(재정관리체제가 보통수준인) 국가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공공재정관리체제를 통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대한 원조유입액의 비중을 3분의 1수준으로 감축하고, 90%의 공여국이 개도국의 재정관리체제를 이용키로 함
 - 조달체제 등급 A인(즉, 조달체제가 우수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조달체제를 활용하지 않는 원조유입액의 비중을 3분의 2수준으로 감축하고, 100%의 공여국이 해당 개도국 조달체제를 이용한다는 목표
 - 조달체제 등급 B인(즉, 조달체제가 양호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조달체제를 통하지 않는 원조유입액의 비중을 3분의 1수준으로 감축하고, 90%의 공여국이 해당 개도국의 조달체제를 이용키로 함
- 지표6과 관련과 병행 설치된 프로젝트관리사무소(PIU)인 parallel PIU의 정의를 기존 부처/기관의 프로젝트 실시조직과 별도로 설립되는 또는 기존 부처의 기능과 중복되는 조직으로서 직원들의 보수를 외부로부터 지급받거나, 또는 외부의 재정지원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외부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르는 조직으로 합의한 후에 이러한 조직의 총수를 3분의 2 감축키로 하였음

- 지표7과 관련, 예측가능성의 정의를 회계연도에 지출(예정된 지출)되는 원조유입액을 분자로 하고, 공여국이 회계연도에 지원을 약속한 원조유입액을 분모로 하여 예측가능성의 목표를 90%이상으로 하기로 함
- 지표8은 당초부터 양자간 원조의 불구속성(untied)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목표외에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지표9과 관련, 전체 원조유입액중에서 program-based approaches에 따라 제공되는 원조규모가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함
- 지표10과 관련, 원조현장에 파견되는 공여국 합동조사단이 전체 조사단의 40%가 되도록 하고, 공여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분석작업의 3분의 2가 넘도록 하기로 함
- 지표11과 관련, 투명하고 이행점검가능한 성과평가시스템이 없는 수원국의 비율을 절반이하로 줄이기로 함
- 지표12과 관련, 원조효과에 관하여 공여국과 개도국이 합의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공통으로 평가하기로 한 바, 이러한 평가에 모든 개도국이 참가하기로 함

- 자료출처 : 1. 오이시디대표부,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후속조치(오이시디 26940 - D000849, 2005.7.11)
2. OECD DAC,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and Donor Practices, May 23, 2005 "Baselines and suggested targets for the 12 Indicators of Progress: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DCD/DAC/EFF(2005)9]
3. OECD, Office of the DAC Chair, Jul. 13, 2005,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Targets for the indicators of progress" [DAC/CHAIR(2005)12]
4. KOICA, 2005. 6., “원조조화, 일치, 개발결과관리 논의동향”, 국제협력동향

작성 : 정창호 chung@koreaexim.go.kr, 자료협조: 오용근, 박주연

목차보기

주요토픽 2

타이드원조 프로젝트관련 원조공여국간 이의제기의 주요 수단 및 사례

【요 약】

- 현재 우리나라는 DAC 미가입국임에 따라 공적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는 공적개발원조 규범만 준수 (DAC 정책은 참고)
- 공적수출신용협약에서는 매칭, 대면협의요청 및 공통방침제안을 통해 공여국간 이의제기 가능
- 타이드원조규제인 Helsinki Package 도입이후 이의제기 사례 급격히 감소 추세
- 스페인의 원조사업이 최근 매칭의 대부분을 차지

1. 원조공여국간 이의제기 수단

-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정책문서 및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DAC 미가입국임에 따라 수출신용협약에 의해서만 규율됨
- 공적수출신용협약("협약")은 공적수출신용외에 무역관련원조(타이드원조•혼합신용)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협약에서 규정된 타이드원조에 대한 이의제기 수단으로는 매칭, 대면협의요청 및 공통방침제안이 있음
- 매칭(Matching)³⁾
 - 협약에서는 매칭을 위한 전제조건 없이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타국의 타이드원조 사업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매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협약비참가국의 원조공여에 대해서도 매칭이 가능

3) 과거의 경우, 매칭시 당초 최초 제안된 금융조건보다 유리한 매칭, 즉 비동일조건 매칭(non-identical matching)이 가능하였으나, '04년 1월 수출신용협약의 개정으로 매칭은 동일조건에 대한 매칭만을 규정하고 있음. OECD 수출신용사무국의 유권해석('05.4.16.)에 따르면 비동일조건 매칭은 새로운 원조의향으로 이해됨에 따라, 협약에서 규정된 입찰종료일 또는 원조공여승인일중 우선 도래일을 기준으로 30일전에 협약참가국앞 사전통지 대상이 됨

- 그러나, 각 참가국은 타국의 타이드 원조사업이 자국 기업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입찰 결과가 자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매칭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
 - 미국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매칭 결정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당 타이드 원조 사업이 과거 미국의 수출기업이 상업금융을 통해 수행한 것과 유사한 사업인 경우”를 가장 중요한 매칭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미국(재무부)은 타이드원조 매칭을 위해 미국수출입은행(USEXIM)의 특별기금인 TACPF(Tied Aid Capital Projects Funds)를 두고 있으며, 매칭 대상사업은 3천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대면협의(Consultations) 요청

- 협약은 적격프로젝트(Project Eligibility) 요건 또는 적격국가(Eligible Countries)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타이드원조를 금지’⁴⁾하고 있음
 - 적격프로젝트(Project Eligibility) 요건 : 상업성(Commercially Viable)이 없는 사업
 - 적격국가(Eligible Countries) 요건 : 세계은행의 17년 이상의 장기차관 수혜 가능국

【적용 예외】

- UN 분류 최빈국, 양허성수준(C.L.) 80% 이상의 사업, 또는 2백만 SDR 이하의 사업 → 사업의 상업성 유무와 관계없이 타이드원조 제공 가능
- Soft Ban 국가⁵⁾ → 세계은행의 장기차관 수혜여부에 관계없이 타이드 원조 제공 금지

- 만약, 참가국이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 또는 부적격 국가에 대해 타이드원조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른 참가국은 양국간 협의 (Face-to-face Consultation)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참가국 대면협의에서 사업의 상업성을 결정

4) '91년 제안된 헬싱키패키지(Helsinki Package)에 근거하여 '92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타이드원조 제공 금지, 최빈국(LDC)의 타이드원조시 양허성수준(C.L.) 50%이상 충족 등임. 한편, 수출신용협약참가국은 타이드원조 제공 가능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인 ‘타이드원조 사전지침(Ex Ante Guidance for Tied Aid)’을 '96년 12월 도입하였음

5) 구소련에서 분리된 동구권의 7개 체제이행국가들로 벨라루스, 불가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해당됨

- 전체 대면협약에서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당해 타이드원조 공여국은 사업 추진을 포기 또는 보류하거나, 언타이드원조·상업금융 등으로 조달 재원을 변경하여 협약에 부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됨
- 상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을 고수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사업추진의 당위성(정책적 사유) 등을 설명하는 서한을 OECD 사무총장앞으로 발송한 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함.

□ 공통방침제안(Common Line Proposal)

- 공통방침은 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약참가국이 특정국가 또는 특정사업에 대해 원조금지(No-Aid)를 제안하면, 참가국간 합의를 통해 공통방침을 결정함
- 반대로, 타이드원조 금지국가에 대해서 ‘원조제공을 위한 공통방침’을 도출할 수도 있음
- 공통방침은 미국이 주로 요청하여 설정된 사례가 있으나, 최근 들어 참가국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새로운 공통방침의 제정은 없는 추세임

2. 이의제기 관련 사례

□ 매칭 사례

- '92년 타이드원조를 규제하기 위한 **Helsinki Package** 도입이후 '95년을 전후하여 참가국간 매칭이 많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연간 매칭건수가 없거나 2~3건에 불과 ※ 타이드원조에 대한 매칭사례는 붙임을 참조
- 미국의 정책이 방어적 매칭(defensive matching)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칭의 절반에 해당하며, '02년 이후 미국의 매칭 건은 없는 상태임
- 일본의 경우 '92년, '96년, '97년 각 1건의 매칭만 있으며, '98년 이후 매칭은 전무

'93년 이후 참가국간 매칭 사례

구 분	93년 이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합 계	
														건수	비중
전 체	16	13	11	43	12	8	7	4	3	5	1	3	3	129	100%
미 국	1	2	2	35	7	4	2	4	1	2				60	46.5%
영 국	7	2	1	3										13	10.1%
네덜란드	2	2	2	1	1		1				1			10	7.8%
일 본	1				1	1								3	2.3%

□ 대면협의 사례

- 매칭건과 마찬가지로 대면협의도 '93년~'95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타이드윈조 규제의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난 '00년 이후에는 발생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였음

협약참가국간 대면협의 현황

구 분	92~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합계
대면협의 프로젝트 (a)	122	4	2	1	2	0	131
상업성판정 프로젝트 (b)	64	4	1	0	1	0	70
전 체 타이원조통보 (c)	1,565	181	123	136	128	81	2,214
대면협의 비중 (a/c, %)	7.8	2.2	1.6	0.7	1.6	0	5.9
상업성판정 비중 (b/a, %)	52.5	100	50	0	50	0	53.4

- 대면협의를 상정된 건수(131건)중 프랑스 프로젝트가 27.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호주(9.2%), 일본(7.6%) 순으로 나타남. (한국 '02년 알바니아 1건)
- 대면협의 대상 프로젝트(131건)는 중국이 45.8%(60건)로 가장 많으며, 인도네시아 12.2%(16건), 파키스탄 6.1%(8건)로 동 3국이 전체의 64%에 해당

- 대면협약에서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업중 28.6%만 사업추진을 포기한 반면, 전체의 61%는 조건변경을 통해 타이드원조가 아닌 방법(35.7%)으로 또는 원래의 타이드원조 방식(25.7%)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

'92년~'04년간 대면협약에서 상업성 판정 사업의 진행 현황

구 분	사업포기	사업 계속 진행		미확정	미분류	합 계
		타이드원조 유	언타이드 등으로 조건변경			
건 수	20	18	25	5	2	70
비 중	28.6%	25.7%	35.7%	7.1%	2.9%	100%

붙임 : 타이드원조에 대한 매칭 사례('00년 이후)

- 자료출처: 1.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2005)
 2. OECD, April 2005, 2004 FULL-YEAR REVIEW OF EXPERIENCE WITH THE "HELSINKI" TIED AID DISCIPLINES OF THE ARRANGEMENT, pp. 79~80, [TD/PG(2005)6]
 3. US EXIM Bank, "Competitiveness Report for 2003", www.exim.gov
 4. 수출입은행 파리사무소 및 워싱턴사무소 조사 자료

작 성 자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자료협조 : 차광수, 정창호

(붙임)

타이드원조에 대한 매칭사례('00년 이후)

년도	매칭통지국	매칭대상국	수원국	원조부문	금액 (백만 SDR)	양허성수준 (C.L., %)
'00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중국	가금류	1.5	32.25
	덴마크	프랑스	이집트	석유/가스	1.5	35.32
	미국	스페인	베트남	전력송배전	4.0	41.43
'01	프랑스	스페인	튀니지	철도교통	4.0	35.61
	프랑스	스위스	튀니지	철도교통	1.5	35.00
	스페인	프랑스	모로코	전력송배전	15.0	35.44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해상교통	30.0	38.47
	미국	스페인	가나	태양에너지	4.0	35.58
'02	네덜란드	협약비참가국	방글라데시	전력송배전	8.5	12.99
'03	오스트리아	스페인	튀니지	철도교통	60.0	35.35
	프랑스	스페인	튀니지	철도교통	60.0	35.00
	이태리	스페인	모로코	철도교통	140.0	32.26
'04	프랑스	스페인	튀니지	철도교통	30.0	35.00
	프랑스	캐나다	알제리	상수도/가스	60.0	35.00
	이태리	스페인	튀니지	철도교통	60.0	35.11

자료 : TD/PG(2005)6, April 2005, OECD

목차보기

단 신 1

2005년도 G8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 아프리카 및 개발, 글로벌 경제 등의 의제로 G8⁶⁾ 정상회의가 '05년 7월 6일에서 8일까지 영국의 글렌이글(Glencleugh)에서 개최

- G8 회원국은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05년 의장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및 프랑스이며, 당초 G7 정상회의였으나 러시아가 '98년 회원이 되면서 G8로 변경
- G8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는 G8에 속한 국가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비공식적인 것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UN의 5개 상임이사국중 4개국이 동 정상회의의 회원임에 따라 UN의 활동을 보완하면서, 세계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이 제시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과거 G8에서 도출된 구체적 합의로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에 대응하기 위한 Global Health Fund 설치(G8 14억불 기출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세계 고채무빈국의 채무탕감(HIPC Debt Initiative), 돈세탁방지 등이 있으며, 공동합의의 후속작업은 UN 및 세계은행 등을 통해 이루어 짐

□ 아프리카 및 개발 관련 구체적 합의 도출

- G8은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를 2010년까지 배증하기로 합의
 - 아프리카의 빈곤경감 및 개발과 관련, G8 정상은 '아프리카 주요국 정상*', 세계은행(WB), IMF, UN, 아프리카연합집행위의 대표와의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201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를 배증하기로 합의
 - * 가나, 남아공, 나이지리아, 세네갈, 알제리, 이디오피아 및 탄자니아
 - ** 자구노력은 아프리카 각국이 자체적으로 빈곤경감 및 경제성장 도모, 투명성 및 거버넌스 제고, 민주적 제도 및 절차 강화, 부패방지, 아프리카 지역내 무역장벽해소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천

6) G8은 the 'Group of Eight' nations의 약자로, 첫 회의는 '75년 프랑스 랑부예(Rambouillet)에서 개최되었음

- OECD에 따르면 UN의 천년개발목표(MDG)를 차질없이 달성하게 될 경우, 2010
까지 매년 500억 달러의 원조 증가가 예상되며, 이중 250억 달러가 아프리카에
대한 증가분일 것으로 전망

○ 정상회의에 앞서 '05년 6월 11일 열린 G8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G8 정상은 아프리카 고채무빈국(HIPC)의 IDA, IMF 및 아프리카개발기금
(ADF)에 대한 채무를 완전 탕감하는데 합의

□ 미국의 반대로 기후변화관련 공동 합의 도출 실패

○ 의장국인 영국은 지구기후변화의 중대성 및 이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책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합의 도출 실패

- G8은 남아공•멕시코•브라질•인도•중국의 대표 및 세계에너지기구, 세계은행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및 세계경제를 의제로 교토의정서의 준수 등을 논의
하였으나,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공동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다만, G8은 기후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인류의 모든 경제행위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음에 공동인식을 갖고 ‘글렌이글 행동계획’을 발표, 향후 추
가적인 논의 지속하기로 함

자료출처 : 2005년도 Gleneagles G8 정상회담 공식 웹사이트, www.g8.gov.uk

작 성 자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목차보기

단 신 2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 붐과 석유

왜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가? '02년 카나나스키스, '03년 에비앙, '05년 7월의 글렌이글에서의 연이은 G8 정상회의 등 최근 수년간 주요 선진국이 아프리카를 글로벌 테마로써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문제는 이전부터 주지되어 온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더욱 아프리카에 대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원조공여국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구미 선진국의 분명한 '아프리카 원조전략'

□ 수단과 차드에서의 사례

- '05년 4월, 수단 원조공여국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원조를 약정
 - '05년 4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수단 원조공여국회의에서 당초 목표액인 26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45억 달러의 지원약정*이 있었음.
 - * 미국이 최대인 765백만 달러, 영국 545백만 달러, 일본은 100백만 달러를 약정
 - 당초, 수단의 개발재원은 원조공여국으로부터의 지원(수단 재정수입의 1/3) 이외에 수단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유전판매수입으로도 충당될 예정이었음.
- 수단 이외의 국가에서도 공적원조의 담보물로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안정적 석유공급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선진 원조공여국의 움직임이 포착
 - '02년 5월, 세계은행, 미국국무성 및 USAID의 원조전략담당자간의 회의에서 장래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드의 석유기지에서부터 인접국인 카메룬의 해안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약 1,070km의 파이프라인건설사업⁷⁾에 대해 논의

7) 세계은행 사업명은 "차드-카메룬 석유개발 및 파이프라인건설 프로젝트"이며, 차드내 유전개발에 15억 달러, 차드의 Doba에서 카메룬 Kribi 연안까지의 파이프라인건설에 22억 달러, 총사업규모 37억 달러의 유전개발사업임. 사업주(Sponsor)는 미국 Exxon Mobil(40%, 대주주), 말레이시아 Petronas(35%), 미국 Chevron Texaco(25%)이며, 금융조달은 사업주 자체조달 30억 달러, 미국 및 프랑스 공적수출신용기관(ECA) 6억 달러, IBRD 1억 달러임. 이와 별도로, IDA는 차드 및 카메룬의 석유 개발 및 관리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을 위한 양허성차관(원조차관) 45백만 달러를 제공

- '동 파이프라인건설 사업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지원에 따른 낮은 경제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년 9월 세계은행 이사회는 동사업의 추진을 결정. 르몽드지는 차드를 방문한 “시라크 대통령이 데비 차드 대통령에게 세계은행의 동 사업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2003년 9월 3일자로 보도

□ 주요 원조공여국의 아프리카 원조 의도

-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및 국가안전보장정책에 기초한 명확한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제공
 - 미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산유국⁸⁾인 ‘나이지리아, 앙골라, 가봉, 적도기니, 콩고공화국’에 대한 이국간 ODA에서 압도적인 최대 공여국 지위에 있으며, 기타 주요 산유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양상임
- 프랑스·영국, 석유자원 공급원 확보 및 구식민지의 안정 지원 목적
 - 프랑스나 영국은 북해유전의 생산 감소에 대응하여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이용하여 EU에 대해 행사하게 될 정치적 영향력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석유자원의 공급원을 아프리카로 옮기는 것을 추진중
 - 또한, 구식민지인 아프리카로부터 이주민 유입 등이 국내문제에 직결되는 영·불 양국의 사정도 간과할 수 없는 아프리카 지원의 배경
- 미국, 중동 및 중남미에 대한 석유 수입(輸入) 의존도 저감을 목적
 - 세계 최대의 석유소비·수입국인 미국도 부시 정권이후 아프리카원조를 3배 증액하였음. 미국의 '03년도 석유수입중 아프리카지역의 비중이 15% 정도에 달하며, 금후 10년간에 25%까지 그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BP통계 2004)
 - 특히, 서아프리카 연안의 심해해저나 앙골라는 최근 대량의 석유매장량이 확인되어, 석유 메이저가 광구를 차례로 사들이고 있는 상황
 -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정치적 불안정이 증대되고 있는 중동이나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에 수송거리도 짧은 아프리카로부터의 석유수입 확대를 통해 석유 공급원의 다각화 도모가 자리 잡고 있음

8)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의 2004년 원유생산량(천bbl/日) : 나이지리아 2,508, 알제리 1,933, 리비아 1,607, 앙골라 991, 이집트 708, 적도기니 350, 수단 301, 콩고민주공화국 240, 가봉 235, 튀니지 69, 차드 168, 카메룬 62, 기타 아프리카국 92 (자료 : BP사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5)

2. 중국의 석유이권 추구

□ UN의 경제제재국 여부에 관계없이 독자적 석유 채굴 추진

-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석유소비국인 중국도 석유 이권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제제재국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서방의 석유 메이저를 통하는 일도 없이 항상 자력으로 채굴을 시도하고 있음
 - [’04년] 4월 23일자 르피가로지 보도에 따르면, 수단이 유엔의 경제제재로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시기에도 중국은 조사, 파이프라인의 설치, 석유채굴을 실시하고 있었음 — 중국은 당시 경제제재결의안에 대한 유일한 거부권 행사국

□ 석유외교 적극 구사

- 중국의 수뇌부는 ’04년부터 차례로 아프리카 산유국을 방문하고, ‘석유분야에 대한 협력확대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하는 등 독자의 석유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
 - ’04년 1월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집트, 알제리, 가봉을 방문하였고, ’05년 2월에는 부수상이 케냐, 콩고공화국, 앙골라를 각각 방문하여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의 협력확대와 함께 아프리카 국가에의 지원지속을 약속
- 또한, 중국은 해저석유를 노리고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에 PKO부대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의 배경에는 ‘대만대책’의 의미도 담겨 있음.
 - 라이베리아의 舊정권은 대만 지지국중 하나였으나, 舊정권 붕괴후 발족한 잠정정권이 북경지지를 선언한 직후인 ’04년 1월 중국이 라이베리아에 500명의 중국군대를 파견하였음.

3. 석유판매수입과 아프리카의 개발

□ 변함없이 빈곤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 산유국

- 다양한 의도에 따른 원조공여국들의 산유국앞 재원공급 및 산유국의 석유판매수입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산유국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선진국의 낮은 석유매입가격에 일부분 기인
 - 작년 訪日한 아프리카연합(AU)의 코나레 위원장은 강연회에서 “석유판매수입에 관한 아프리카 산유국의 배분 몫이 너무나도 적다”고 각국에 아프리카 석유에 대해서 적정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음

□ 석유판매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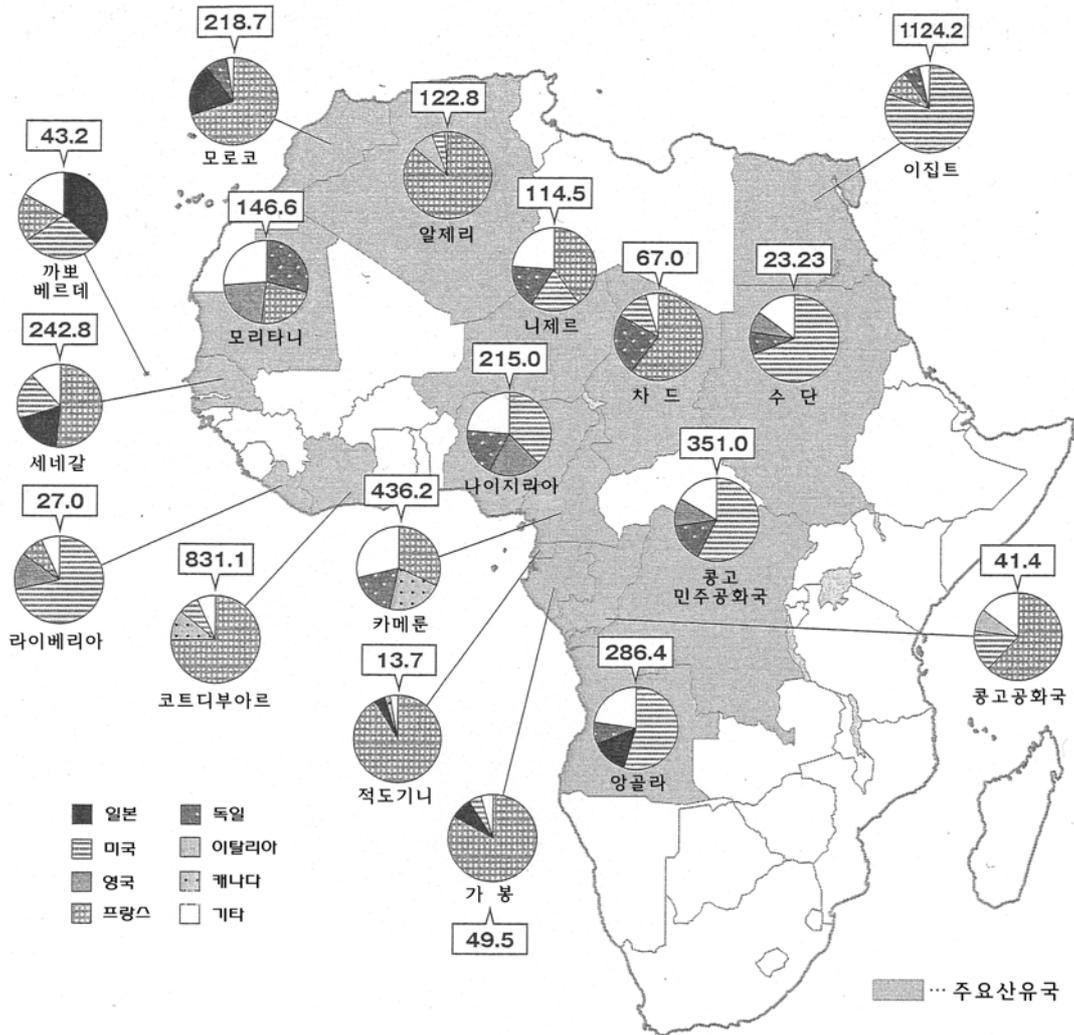
- 아프리카 산유국의 석유판매수입에 대한 사용처가 대개는 불투명한 반면, 차드 정부가 2003년 채택한 획기적인 법률인 ‘석유판매수입관리법’은 동국의 석유수출대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한 시도로서 주목됨.
 - ‘차드·카메룬 석유파이프라인건설 사업’의 경우, 최초의 석유판매수입인 650만 달러는 런던의 시티뱅크에 개설된 전용특별계좌에 입금되고, 이후의 동국 석유판매수입은 ‘석유판매수입관리법’에 기초하여 의료·교육·농촌개발·주민앞 보상 등의 우선항목에 지출됨. 이를 정부·의회·시민단체·노동조합 등의 대표자 9인으로 매 3년마다 구성되는 감시위원회가 감리·모니터링하게 됨. 이런 체제는 차드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성공한다면 다른 산유국에의 적용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한 것임
- 아프리카는 석유 이외에도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의 보고이나, 귀중한 자원이 분쟁의 불씨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에의 발판이 되느냐는 각국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붙임 : [그림] 아프리카에 대한 DAC 주요국의 2003년도 이국간 ODA 지원 현황

[그림]

아프리카에 대한 DAC 주요국의 2003년도 이국간 ODA 지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총지출액)



자료출처 : 1. 国際開発ジャーナル, No. 584, 2005. 7. 1., "アフリカ援助ブームと石油", www.idj.co.jp
 2. World Bank Group, The Chad-Cameroon Petroleum Development and Pipeline Project, http://www.worldbank.org/afr/ccproj/project/pro_overview.htm
 3. www.bp.com,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5"
 요약•정리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번역감수 : 이종성 jslee@koreaexim.go.kr,
 자료협조 : 정성수 ssjung70@koreaexim.go.kr, 이기호 kiholee@koreaexim.go.kr

목차보기

【자료 1】

2004년도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협력무상원조 현황

1. 기술협력무상원조(TA Grants)의 종류

사업준비무상자금(Project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 PPTA)

사업타당성분석(F/S), 분야별·지역별 이슈분석, 투자 및 구조조정 설계 등을 위한 자금

자문무상자금(Advisory Technical Assistance : ADTA)

분야별 정책연구, 비사업성(Non-project related) 인력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한 자금
예)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차관의 자문역·기술진 파견이나 능력구축을 위한 담당공무원 및 기술진 교육훈련과 개발조사 등

2. 기술협력무상원조 협조융자(Co-financing)⁹⁾ 참여방식

신탁기금(Trust Fund : T/F) 설립에 의한 협조융자방식

신탁기금 설립과 사용에 관한 기탁국가와 ADB간의 협정인 채널자금지원협정(Channel Financing Agreement : CFA)을 체결하고 해당자금을 ADB 지정계좌에 예치

프로젝트건별 협조융자방식

신탁기금을 설립하지 않고 개별국가가 지원한도, 관심국가와 분야, 주제 등에 대해 ADB와 사전에 합의서(Letter of Agreement)를 교환한 뒤 약정된 스케줄에 따라 약정금액을 분납하는 방식

* ADB의 국별·지역별 지원계획이 합의서를 체결한 해당국의 이해와 일치하게 되면 ADB(협조융자부서나 사업담당 프로젝트 매니저)가 사업준비과정에 동 해당국의 참여 여부를 타진

9) 융자는 자금의 상환을 전제로 하는 통상적인 대출(loa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grants)·대출(loans)·지분출자(equity) 등의 형태 또는 혼합된 형태를 포함하는 다양한 자금조달을 통칭함

3. 기술협력무상원조별 지원현황

□ 사업준비무상자금(PPTA)

- '04년 PPTA는 약 46백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이중 재원별로 ADB가 지원한 PPTA는 약 36백만 달러로 78%를 차지하였고 합의서를 통해 개별국가가 지원한 PPTA는 약 10백만 달러로 22%를 차지하였으며 국제기구가 지원한 PPTA는 없었음
- ADB에 의해 지원된 PPTA의 경우 일본특별기금¹⁰⁾ 49%, 아시아개발기금¹¹⁾ 43%, 기술원조특별기금¹²⁾ 8% 순으로 지원됨
- 개별국가에 의해 지원된 PPTA의 경우 영국(72%), 캐나다(8%), 오스트리아(6%) 순으로 총 8개국이 지원

□ 자문무상자금(ADTA)

- 2004년 ADTA는 약 108백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이중 재원별로 ADB가 지원한 ADTA는 약 70백만 달러로 65%를 차지하였고, 개별국가가 지원한 ADTA는 약 35백만 달러로 32%를 차지하였으며 국제기구가 지원한 ADTA는 약 3백만 달러로 3%를 차지하였음
- ADB에 의해 지원된 ADTA의 경우 아시아개발기금 53%, 빈곤퇴치협력기금¹³⁾ 22%, 일본특별기금 20% 순으로 지원됨
- 개별국가에 의해 지원된 ADTA의 경우 영국(65%), 네덜란드(15%), 오스트리아(5%) 순으로 총 8개국이 지원
- 국제기구가 지원한 ADTA의 경우 거버넌스협력기금¹⁴⁾ 31%, 세계환경자금¹⁵⁾ 29%, 성평등개발협력기금¹⁶⁾ 16% 순으로 총 5개 기금이 지원

10) Japanese Special Fund(JSF)

11) Asian Development Fund(ADF)

12) 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TASF)

13) Poverty Reduction Cooperation Fund(PRCF)

14) Governance Cooperation Fund(GCF)

15) Global Environment Facility(GEF)

16) Gender and Development Cooperation Fund(GDCF)

'04년도 ADB 기술협력무상원조 지원현황

(단위 : 천 달러)

재 원				PPTA(A)		ADTA(B)		합 계(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 금	ADB	자채 ^{주1)}	아시아개발기금	30	15,525	86	36,639	116	52,164	
			이국간	일본특별기금	28	17,650	27	14,086	55	31,737
		외부 ^{주2)}	다국간	빈곤퇴치협력기금	-	-	28	15,125	28	15,125
				기술원조특별기금	7	3,004	11	3,864	18	6,868
		소 계			65	36,179	152	69,715	217	105,894
	국 제 기 구	국 제 기 구	거버넌스협력기금		-	-	5	1,040	5	1,040
			세계환경자금		-	-	1	975	1	975
			성평등개발협력기금		-	-	2	550	2	550
			통상금융협력기금		-	-	1	500	1	500
			빈곤퇴치전략기금		-	-	1	300	1	300
			소 계		-	-	10	3,365	10	3,365
	소 계				65	36,179	162	73,080	227	109,259
	개 별 국 가	영국			10	7,190	6	22,750	16	29,940
		네덜란드			1	165	3	5,360	4	5,525
오스트리아			1	600	6	1,696	7	2,296		
덴마크			2	550	6	1,640	8	2,190		
캐나다			1	760	2	950	3	1,710		
스페인			1	550	2	786	3	1,336		
스웨덴			-	-	1	1,200	1	1,200		
스위스			-	-	1	600	1	600		
핀란드			1	113	-	-	1	113		
노르웨이			1	100	-	-	1	100		
소 계			18	10,028	27	34,982	45	45,010		
총 계 (실건수) ^{주5)}				83 (76)	46,207	189 (175)	108,062	272 (251)	154,269	

- 주] 1. ADB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출연한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2. ADB 회원국들이 ADB에 자발적으로 출연한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3.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ADB에 위탁한 기금 (환경, 성평등 등 주제별로 구성)
 4. 여기의 기금은 개별국가가 ADB와 채널자금지원협정을 체결하는 신탁기금(T/F)과 다름
 5. 실건수와 총계건수의 차이는 해당프로젝트에 혼합신용(ADB+신탁기금, ADB+개별국가, 신탁기금+개별국가 등)으로 지원되어 재원별로 지원건수가 중복 계산된 데 기인

자료출처 : ADB Annual Report 2004, Part 4: Annexes and Appendixes, Table 22. Technical Assistance Grants, 2004, p. 210-217]

작 성 자 : 정창호 chung@koreaexim.go.kr, 정성수, ssjung70@koreaexim.go.kr]

목차보기

【자료 2】

2005년도 세계은행 및 OECD 국가분류

1. 2005년도 세계은행 소득별 국가분류

- 세계은행은 2005년도 소득별 국가를 분류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무상원조의 지원조건에 적용기로 함
 - 등급상승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리투아니아, 스와질랜드, 슬로바키아, 앙골라, 에스토니아, 적도기니, 터키, 폴란드 (10개국)
 - 등급하락국가 : 리비아 (1개국)

2004~2005 국가분류기준 변동내역

카테고리	원조조건	1인당 GNI (US\$) ^{주1)}	
		2004	2005
I	Civil Works Preference ^{주2)}	765이하	825이하
II	IDA Eligibility & 20-year IBRD Terms ^{주3)}	766~1,465	826~1,575
III	17-year IBRD Terms	1,466~3,035	1,576~3,255
IV	15-year IBRD Terms	3,036~5,295	3,256~5,685
V	IBRD Graduation	5,295초과	5,685초과

- 주 : 1. 소득분류시 적용하는 1인당 GNI는 분류년도 1년 전 자료이용
 2.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구매되는 토목공사(civil works)의 입찰평가에 있어 국내계약자(local contractor)가 토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격국내계약자에게 특혜(preference)를 줄 수 있음
 3. IDA 제공여신 및 IBRD 제공 20년 만기 변동금리차관을 받을 수 있음

2. 2005년도 OECD 국가분류

- OECD는 상기 세계은행의 소득별 국가분류에 기초하여 2005년도 국가분류(Country Classification 2005)를 2005년 7월 11일 발표하였으며, 이를 7월 20일부터 '공적수출신용협약'에 적용기로 함

- 특히, OECD 국가분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혜 적격여부 및 구속성차관 (Tied Aid) 수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ODA 적격성]

- 비적격확정국 : 크로아티아 (1개국)
- 비적격예상국* :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4개국)
- 적격예상국* : 리비아 (1개국)

[Tied Aid 적격성]

- 비적격국확정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개국)
- 비적격예상국* : 적도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3개국)
- Soft Ban제외 예상국* : 러시아 (1개국)

* OECD는 해당국의 1인당 GNI가 “2년 연속 기준(threshold)을 통과하면 2년째 부터” 공적개발원조 및 구속성차관 등의 적격여부를 변경함. 상기 예상국은 '05년에 처음으로 기준을 통과하였으나, 2년 연속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예상국으로 분류되었고, '06년 에도 기준을 통과하여 2년 연속 기준을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적격여부가 확정됨.

세계은행 및 OECD 분류기준 비교

세계은행		OECD		
1인당GNI (US\$)	카테고리	카테고리	ODA	Tied Aid
825이하	I	II	적격	적격
826~1,575	II			
1,576~3,255	III			
3,256~5,685	IV			
5,685초과	V	I	비적격	비적격

3. 최근 3년간 세계은행 소득별 국가분류 변동현황

□ 분류기준 및 해당국가수

- 소득별 국가분류 기준인 1인당 GNI가 최저인 카테고리 I의 경우 2002년도 745달러 이하에서 2005년도에는 825달러 이하로 변경되고 최고 카테고리인 카테고리 V의 경우 2002년도 5,115달러 초과에서 5,685달러 초과로 변경되었음.
- 카테고리별 해당국가수는 2003~ 005년 중 카테고리 I과 II의 해당국가수는 감소하였고 카테고리 III과 IV의 해당국가수는 증가

분류기준 및 해당국가수

카테고리	원조조건	1인당 GNI (US\$)		해당국가수	
		2002	2005	2002	2005
I	Civil Works Preference	745이하	825이하	64	58
II	IDA Eligibility & 20-year IBRD Terms	746~1,435	826~1,575	22	21
III	17-year IBRD Terms	1,436~2,975	1,576~3,255	28	31
IV	15-year IBRD Terms	2,936~5,115	3,256~5,685	20	22

□ 카테고리 변동국가의 지역별 분류

- 카테고리가 상향 조정된 20개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구 및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이 11개국으로 가장 많음

지역별 상향조정국 분포

지역	해당국가
동구 및 중앙아시아	그루지야, 러시아연방, 벨로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터키 (11개국)
사하라이남(연안)	까보베르데(Cape Verde),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앙골라, 적도기니 (5개국)
중미 및 카리브해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콰도르 (3개국)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1개국)

- 한편, 카테고리가 하향 조정되거나 신규로 편입된 6개국 중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미국가들이 3개국으로 가장 많음

지역별 하향조정 및 신규 편입국 분포

지역	해당국가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3개국)
동남아	동티모르 (1개국)
사하라이북	리비아, 이집트 (2개국)

(붙임)

2005년도 세계은행 소득별 국가분류

그룹	해당국가 (국가수)
I	가나,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이지리아, 네팔 , 니제르 , 니카라과, 동티모르 ⁴⁾ , 라오스 , 라이베리아, 레소토 , 르완다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몰도바 , 몽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베냉 , 베트남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부탄 , 사우토메프린시페 , 세네갈 , 소말리아 , 솔로몬군도 , 수단 , 시에라이온 , 아이티 , 아프카니스탄 , 에리트리아 , 예멘 , 우간다 , 우즈베키스탄 , 이디오피아 , 인도 , 잠비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캄보디아 , 케냐 , 코모로 , 코트디부아르 , 콩고민주공화국 , 콩고인민공화국 , 키르기스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토고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58개국)
II	가이아나, 그루지야 ²⁾ , 모로코 , 바누아투 , 볼리비아 , 스리랑카 , 시리아 , 아르메니아 ²⁾ , 아제르바이잔 ²⁾ , 앙골라 ²⁾ , 온두라스 , 우크라이나 ²⁾ , 이라크 , 인집트 ³⁾ , 인도네시아 ²⁾ , 중국 , 지부티 , 키리바시 , 투르크메니스탄 , 파라과이 , 필리핀 (21개국)
III	과테말라 , 카뎬베르데 ²⁾ , 나미비아 , 도미니카공화국 , 루마니아 , 마셜군도 , 마이크로네시아연방 , 마케도니아 , 몰디브 , 벨로루시 ²⁾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²⁾ , 불가리아 , 브라질 ³⁾ , 사모아 , 세르비아-몬테네그로 ²⁾ , 수리남 , 스와질랜드 ²⁾ , 알바니아 ²⁾ , 알제리 , 에콰도르 ²⁾ , 엘살바도르 , 요르단 , 이란 , 자메이카 , 카자흐스탄 ²⁾ , 콜롬비아 , 태국 , 통가 , 튀니지 , 페루 , 피지 (31개국)
IV	가봉 , 그레나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²⁾ , 도미니카연방 , 라트비아 , 러시아연방 ²⁾ , 레바논 , 리비아 ⁴⁾ , 말레이시아 , 모리셔스 , 베네주엘라 , 벨리즈 ²⁾ , 보츠와나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²⁾ , 아르헨티나 ⁴⁾ , 우루과이 ⁴⁾ , 적도기니 ²⁾ , 칠레 , 코스타리카 , 터키 ²⁾ , 파나마 (22개국)

- 주] 1. 표시는 최빈국(LDC) (총 49개국)
 2. 2002-2005년중 상향 조정된 국가 (총 20개국)
 3. 2002-2005년중 하향 조정된 국가 (총 2개국)
 4. 2002-2005년중 신규진입국가 (총 4개국)

자료출처 : 1. OECD, "Country Classification 2005", 11 Jul 2005
 2. The World Bank, Operational Manual, Operational Policies 3.10 Annex D, " IBRD/IDA Countries : Per Capita Incomes, Lending Eligibility and Repayment Terms", Jul 2005

작 성 자 : 정성수, ssjung70@koreaexim.go.kr

목차보기